



본인은 여권법 제5조 및 여권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신청·여권수령 등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장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대행업체명  전산코드      접수사군

※ 대리인이 여권 접수 및 수령시에는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여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 이 신청서상의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여권법 제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귀 하

특 기 사 항				영수(납입)필증 붙이는 난		
심사란	접수자	심사자	발급자	영수필증		납입필증

※ 유의사항

1.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3.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여권발급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의 심사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단수여권(여행증명서 포함)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8.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무효로 처리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9. 발급된 후 6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10. 신청에서 수령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1주일정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11. 사증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事前)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이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명 기재요령

1.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 정정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하여 여권명의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音譯)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 GILDONG, GIL-DONG)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